2020년도 제1회 추경
평창군기금운용계획(변경)안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2020년도 제1회 추경
평창군기금운용계획(변경)안

의 안 번 호	241

제출년월일 : 2020. 4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20년도 제1회 추경 평창군기금운용계획(변경)안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통합관리기금

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재원 조달 방안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및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편성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나. 사회복지기금

재난기본소득 지급 재원 조달 방안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다. 체육진흥기금

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재원 조달 방안으로 체육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라. 식품진흥기금

2019년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마.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

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재원 조달 방안으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바.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음.

(단위:천원)

기 금 명	계획액	기정계획액	비교증감
합 계(8건)	**22,904,794**	**18,404,794**	**4,500,000**
통합관리기금	6,792,469	2,292,469	4,500,000
사회복지기금	6,585,447	6,585,447	0
체육진흥기금	2,825,761	2,825,761	0
식품진흥기금	105,759	105,759	0
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	132,260	132,260	0
재난관리기금	2,777,801	2,777,801	0
옥외광고발전기금	113,676	113,676	0
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	3,571,621	3,571,621	0

3. 관계법령

가.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 및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 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